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(3단계)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

1. 관련근거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25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3350(2021.7.26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.27.부터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14개 시·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*: 2021. 7. 27.(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2468(2021.7.18. 사적모임 제한)에 의한 조치는 2021.7.27.부터 본 조치로 대체하고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2909(2021.7.21. 공연장 추가조치)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3268(2021.7.23.)에 의한 공연장 관련 조치는 당초대로 2021.8.1.까지 적용

나. 적용지역: 14개 시·도**

- *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: 거리두기 3단계

- 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-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편·홀덤편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

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
- 기타시설(13종): 스포츠키팀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**종교시설**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단체에서는 소속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방역지침(4단계 개선내용(7.20 시행) 포함)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2. 기본 방역수칙 1부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주무관

박승화

행정사무관

손문희

종무1담당관

전결 2021. 7. 27.

강성태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2692

(2021. 7. 27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15동 .

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28

팩스번호 044-203-3462

/ psw0113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